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한덕수 (행정안전부 등 7개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응시자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사유로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해 주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가맹사업법 시행령」 등 7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법령별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7. 17. ~ 8. 26.)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제1조(「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시험 응시 의사를 철회할”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공정거래위원회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시험 응시 의사를 철회할 경우
4.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치료·입원 또는 격리(시험일이 격리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6. 본인의 배우자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자녀가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제2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감정평

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치료·입원 또는 격리(시험일이 격리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6. 본인의 배우자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자녀가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제3조(「공인노무사법 시행령」의 개정)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치료·입원 또는 격리(시험일이 격리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7. 본인의 배우자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자녀가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제4조(「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의 개정)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제4호 중 “위험”을 “위험이나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제5조(「변리사법 시행령」의 개정)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치료·입원 또는 격리(시험일이 격리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7. 본인의 배우자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자녀가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

제6조(「소방기본법 시행령」의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7제4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 전액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치료·입원 또는 격리(시험일이 격리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 전액

7. 본인의 배우자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자녀가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 전액

제7조(「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제2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

부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치료·입원 또는 격리(시험일이 격리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부
6. 본인의 배우자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자녀가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응시수수료) ① (생략)	제29조(응시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시험 응시 의사를 철회할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신 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신 설>	2. 공정거래위원회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신 설>	3. 시험 응시 의사를 철회할 경우
<신 설>	4.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신 설>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치료·입원 또는 격리(시험일이 격리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

<u><신 설></u> ③ (생 략)	<u>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u> 6. <u>본인의 배우자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자녀가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u> ③ (현행과 같음)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응시수수료) ①·② (생략)	제13조(응시수수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응시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③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u>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u>
<신 설>	5. <u>「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치료·입원 또는 격리(시험일이 격리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u>
<신 설>	6. <u>본인의 배우자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자녀가 시험</u>

	<u>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 하지 못한 경우</u>
--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① · ② (생략) ③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 4. (생략) <u><신 설></u>	제11조(응시원서 및 수수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u> 6. 「 <u>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에 따른 진찰·치료·입원 또는 격리(시험일이 격리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u>납부한 수수료 전부</u> 7. <u>본인의 배우자나 본인 또는</u>
<u><신 설></u>	
<u><신 설></u>	

④ (생 략)	<u>배우자의 부모 · 조부모 · 외조</u> <u>부모 · 형제자매 · 자녀가 시험</u> <u>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u> <u>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u> <u>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u> ④ (현행과 같음)
---------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응시수수료) ① (생략)	제7조(응시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u><신설></u>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을,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액을 각각 반환한다. 1. ~ 3. (생략) 4. 그 밖에 감염병 전파 <u>위험</u> 등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③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u>위험이나</u>

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응시를 포 기해야 하는 경우로서 시험위 원회가 수수료의 반환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u>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u> <u>인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u> <u>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하</u> <u>다)</u> ----- -----
--	---

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응시수수료 등) ①·② (생략)	제5조(응시수수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③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u>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u>
<u><신 설></u>	6. <u>「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치료·입원 또는 격리(시험일이 격리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u>
<u><신 설></u>	7. <u>본인의 배우자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외조</u>

④ · ⑤ (생 략)	<u>부모 · 형제자매 · 자녀가 시험 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 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전액</u> ④ · ⑤ (현행과 같음)
-------------	--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의7(응시원서 제출 등) ① ~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 4. (생략) <u><신설></u>	제7조의7(응시원서 제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 전액</u> 6. 「 <u>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에 따른 <u>진찰·치료·입원 또는 격리(시험일이 격리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 전액</u> 7. <u>본인의 배우자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자녀가 시험</u>
<u><신설></u>	
<u><신설></u>	

	<u>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u> <u>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u> <u>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u> <u>수수료 전액</u>
--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응시수수료) ① (생략)	제10조의3(응시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u>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부</u>
<u><신 설></u>	5. 「 <u>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u> 」에 따른 진찰·치료·입원 또는 격리(시험일이 격리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부
<u><신 설></u>	6. 본인의 배우자나 본인 또는

③ (생 략)	<u>배우자의 부모 · 조부모 · 외조</u> <u>부모 · 형제자매 · 자녀가 시험</u> <u>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u> <u>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u> <u>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u> <u>수수료 전부</u> 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4518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연 락 처	(044) 202 - 7527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연 락 처	(044) 201 - 3452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4996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	
연 락 처	(02) 2100 - 2695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연 락 처	(042) 481 - 5183
소방청 생활안전과	
연 락 처	(044) 205 - 7667